



Focus on

2023년 개정세법 요약

I. 서언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금년도 정부 세법개정안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12월 23일 국회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제출된 세법개정안과 확정된 개정세법의 내용 간의 주요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세법개정안(7.21)	개정세법(12.23)
법인세율 인하	25% 최고세율 구간 폐지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각 구간별 법인세율을 1% 씩 인하
미환류소득	미환류 세제 폐지	미환류 세제를 3년더 연장하되, 적용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하여 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특례 적용대상 기간 폐지	특례 적용기간을 20년으로 확대



II. 주요 내용

확정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행 법인세법 제55조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며 3,0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하였습니다.

과세표준 (단위: 억원)	현행	개정
~ 2	10%	9%
2 ~ 200	20%	19%
200 ~ 3,000	22%	21%
3,000 ~	25%	24%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세법에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해외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지분율 10% (해외자원개발사업 5%)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법인
 - ✓ CFC Rule에 따른 배당소득, 혼성금융상품(해외에서는 이자비용 취급), 간접투자회사 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 익금불산입률 95%
 -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종전처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 받는 분부터 적용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현행 법인세법 제18의2, 제18의3에서는 기업형태(지주회사/일반회사, 상장회사/비상장 회사) 및 지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 세법에서는 기업 형태 구분에 관계없이 보유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정하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익금불산입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일반		지주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상장	100%	100%	40~100%	100%	50% 이상 20~50% 20% 미만	100% 80% 30%
	30~100%	50%	30~40%	90%		
	30% 미만	30%	30% 미만	80%		
비상장	100%	100%	80~100%	100%		
	50~100%	50%	50~80%	90%		
	50% 미만	30%	50% 미만	80%		

-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 받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납세자는 2023년에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 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현행 법인세법 제13조 등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중소기업은 종전과 같이 1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축소 및 일몰 연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법인에 대하여 투자, 임금, 상생협력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유보된 소득에 대해 20%를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두고 있으나,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법인으로 축소하였고, 적용기한을 25년말로 연장하였습니다.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현행 법인세법 제76조의8에서는 100% 모자관계(간접지배관계 포함)의 법인에 대해서만 연결납세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개정세법은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의 범위를 “지분을 90%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고용 관련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나, 지원방식, 상시근로자 요건, 사후관리 규정 유무 등 고용 지원 제도 간 통일성이 부족하여 납세자 혼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들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한 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등 공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적용대상) 모든 기업* *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중소 (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수도권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상시근로자	<u>850</u>	<u>950</u>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u>1,450</u>	<u>1,550</u>	800	400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세					-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을 우대공제대상에 추가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 <u>34세</u>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p>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고용증가인원×사용자분 사회보험료×공제율(50~100%)</p> <p>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공제율 (중소30%/중견 15%)</p> <p>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 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중소1천만원/중견7백만원)</p> <p>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공제율 (중소 30%/중견 15%)</p>	<p>○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 공제액 (중소 1천3백만원/중견9백만원)</p> <p>-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p>
---	--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하여 가속상각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적용기간) '23.1.1. ~ '23.12.31. 취득분

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

개정세법에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비과세 적용을 위해 적용신청서류 및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p>□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등 적용 신청</p> <p>○ (신청절차)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세무서장에 제출</p> <p>- (첨부서류) 거주자증명서</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경정청구) 실질귀속자 등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p> <p>- (첨부서류)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 거주자증명서</p>	<p>□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 신청 서류 및 절차 보완</p> <p>○ (좌 동)</p> <p>① 첨부서류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 <p>② 절차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장은 비과세등 요건 미충족 또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경정 - 세무서장은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가능 - 소득지급자 등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p>○ (좌 동)</p> <p>- (첨부서류 추가)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p>

➤ 2023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비과세 적용을 위해 적용신청서류 및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p>□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면제</p> <p>*① 국제거래명세서</p> <p>②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p> <p>③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p> <p>○ 개별기업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면제</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인 경우 요약손익계산서 면제</p> <p>○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p> <p>- 전체 재화거래금액 합계 5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p> <p>-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p>	<p>□ 제출면제 범위 확대</p> <p>○ 면제 범위 추가</p> <p>-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 합계 5억원 이하, 용역거래금액 합계 1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1억원 이하</p> <p>○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추가</p> <p>-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추가</p> <p>-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추가</p>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국외투자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국내 투자자가 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국외투자단체는 ①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 법인 아닌 단체로서,



②설립지국 세법상 ①의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 등이 아닌 그 주주·출자자, 수익자가 직접 납세의무 부담하는 단체입니다.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이 세무서장에 신청하여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해당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적용을 받게 되며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구분에 따르게 되고, 소득 인식시기도 국외투과단체에 소득 귀속시 그 출자자등에게 소득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인하

현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0.023%(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닥시장 거래 분에 대해서는 0.23%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세법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과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하기와 같이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됩니다.

시장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코스피	0.23%	0.20%	0.18%	0.15%
코스닥	0.23%	0.20%	0.18%	0.15%

➢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하기의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① 납세자가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관세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② (i)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이거나, (ii)수입자가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착오, 경미한 과실에 따른 경우이거나 혹은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개정세법에서는 ② 발급 사유를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즉, 관세법에 따라 별칙이 적용되는 경우 이거나(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부당한 방법(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와 수입자가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에 있어서 공급자의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곤란한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허용하였고, 해당 증빙을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목적상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제도가 없다보니,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자는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법인세 목적상) 필요경비 공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세법에서는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3.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9%의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세법에서는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및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으로 확대하고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023년 1월 1일 현재 특례를 적용 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에도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받는 근로소득을 5년간 50%(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3년간 70%, 이후 50% 감면)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10년간 50% 감면하도록 개정세법에 반영되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 2023년 1월 1일 현재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분에도 적용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장상황,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제의 시행을 2년 유예(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또한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제의 시행을 2년 유예(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역외거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연장

2019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라 역외거래(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에 7년으로 확대되었고, 그에 맞추어 국세기본법 제 85조의 3 제2항에서 역외거래의 경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또한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존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에서 기존의 국내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의무에 추가하여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 보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 특수관계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등

-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이번 개정세법에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 ✓ 국가별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
 -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신고 필요 (첫 해는 18개월)
 -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